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사용자는 대부분이 노인일 경우가 많아 직접 설명하여야 하나 어려 울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같이 안내한다. 안내시 제품의 용도, 비용등 현재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맞게 안내를 하며 사용설명을 한다.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제품을 선정하고 급여계약을 체결한다.

①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기본 형식은 다음과 같다.

- 단기 대여: 기재된 기간(예: 1개월, 3개월 등)
- 장기 대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예: 6개월, 12개월) 및 자동 갱신 여부
- 구매: 소유권 이전과 보증기간 명시

계약 갱신은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 포함) 통지로 합의한다.
별도 해지 의사 표명이 없을 경우 자동갱신을 적용할 경우 그 조건을 사전에 고지한다.

② 계약목적 : 본 계약은 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용구의 대여 또는 판매(이하 통칭하여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내용대로 본인부담금요율에 따라 개인별 지급가능한 물품에 한해 지급을 하되 본인부담금 요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법인계좌를 통해 받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 표준약관 항목의 변경이 있을 경우

ㅇ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ㅇ권리

- 신원 인수인은 급여제공 서비스 기간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 신원 인수인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급여제공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이용자의 주변이 청결하고 적절한 급여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참관할 권리가 있다.

ㅇ 의무

- 이용자에 관한 질병. 복용하는 약. 건강상태 등 필요한 자료를 기관에 제공하거나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의 월 이용료(본인 부담금)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출장. 출타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때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급여제공서비스 중 이용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필요한 비용이 생기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 인수인. 이용자.급여 제공자 서로간에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⑤ 계약의 해제, 해지

ㅇ 해지 사유(수급자)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일시적인 병원입원의 경우에는 급여제공서비스를 입원기간 중 잠정적으로 중단함.
- 이용자의 사망. 장기입원. 타기관 이적 등.
- 월 이용료(본인 부담금)를 고의적으로 3회 이상 연체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 신원 인수인. 또는 이용자가 기관의 규정이나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발생 우려가 많을 때.
-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ㅇ 해지 사유(기관)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센터 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때
- 14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ㅇ 해지 절차

- 해지 의사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한다.
- 해지 통보 후 14일 내 쌍방 정산(미지급·미반환·수리비 등) 완료한다.
- 제품 반환 시 반납검수표를 작성하여 서명·보관한다.

ㅇ 계약 해제 시 환불 기준

- 선불로 본인부담금을 완납하였을 경우 잔여기간 환불은 남은 기간에 환불한다.